

제243회 임시회  
2005. 9. 14(수)

# 제 안 설 명 서

○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(안)

의회운영위원회

##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(안)

### 1. 경 과

가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나 제안일자 : 2005년 9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임시회

- 2005년 9월 14일,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의결

### 2. 제안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고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(2005. 8. 5, 대통령령 제18991호)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 기준에 맞게 자구를 표기하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

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0,000원에서 1일 110,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임.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재학)

-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일반주민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 하도록 “법령제명 띄어쓰기”기준에 맞게 조례제명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과,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0,000원에서 1일 110,000원으로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“없음 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 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 
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, “동법시행령”을  
“동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1일 80,000원”을 “1일 110,000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32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 <개정 1999. 8. 31, 2003. 7. 18>

1.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

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5조 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, 회기수당(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의 지급기준은 별표 6,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5. 12. 30, 1999. 12. 31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,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<개정 1999. 12. 31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(연육지역을 제외한다)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, 회기중 지방의회 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 <신설 1995. 12. 30, 2003. 12. 18, 2005. 4. 27>

[별표 6] <개정 2005. 8. 5>

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(제15조 관련)

구 분	회기수당 지급범위	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
시·도의회 의원	일 110,000원 이내	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(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)·숙박비 및 식비(3분의 1)의 범위 이내
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원	일 100,000원 이내	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등의지급에관한조례</u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①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고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3조(회기수당)</b> ①의원의 회기수당은 월 8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① …… 「지방자치법」 ……          … 동법 시행령 ……………          ……………          ……………          …………….</p> <p><b>제3조(회기수당)</b> ①……………          110,000원 ……………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